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이동제한 농장 돼지 출하요령 알림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2. 강원 영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이동제한 중인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지정도축장 출하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강원도, 충북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돼지 이동(출하)이 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ASF 관련 이동제한 농장 돼지출하 요령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사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한수의사회

주무관	정흥일	사무관	이용진	구제역방역과장	전결 2021. 5. 18. 이제용
협조자					
시행	구제역방역과-3604	(2021. 5. 18.)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38	팩스번호	044-868-0469	/ llllv280@mifaff.go.kr	/ 대국민 공개

역학농장 등 이동제한 양돈농가 돼지 출하요령

1. 검토 배경

- 강원 영월 ASF 발생에 따라, 강원 영월군 및 역학, 방역대(10km) 등 양돈 농장 14호 돼지 이동(출하) 중단조치(21.5.5~) * 5.18일 기준 14일째 반출 중단
 - * 영월 5호(2호는 역학농장), 강릉 5호(역학 농장), 제천 4호(방역대 10km내 농장)
- ⇒ 돼지 출하 중단으로 과체중 돼지 증가, 밀사에 의한 자돈 폐사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동제한 농장 돼지 출하방안 필요

2. 이동제한 돼지 출하요령

※ 역학농장 및 방역대 농장은 3차 정밀검사(모돈 20%, 비육돈 돈사별 10두)를 실시하고, 3차 정밀검사 이후에 돼지를 출하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검사

- (원칙) 이동제한 농장은 이동제한된 지 14일이 경과된 이후(5.19일~)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 * (일관사육농장) 출하전 모돈 전수 검사(모돈 10두 미만 출하 시 비육돈 포함 10두 이상 검사), 모돈과 비육돈과 함께 출하 시 이동대상 비육돈 5두 이상 채혈, 비육돈만 출하하는 경우에도 모돈 5두, 비육돈 5두 채혈
 - * (비육전문농장) 출하전 비육돈 10두 검사
- (도축장 출하) 권역별로 지정된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검역본부 GPS 관제)
 - * 흑돼지 사육농장(영월 2호)은 평창도축장, 일반농장 8호(영월3호, 강릉5호)는 흥천 또는 원주도축장, 제천 4호는 제천도축장
 - 도축장은 다른 농장 돼지를 먼저 도축한 이후 이동제한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를 마지막으로 도축, 도축 완료 이후 청소·소독
 - 돼지운반차량이 도축장에 진입 전 예찰, 생체검사(임상검사)를 강화하고, 해체 검사 시 비장 종대 등 ASF 임상증상 유무 확인 철저
 - ※ ASF로 의심되면, 즉시 도축을 중단하고 해당 가축운반차량 운행 정지·세척·소독, 출하 농장에 대한 예찰, 정밀검사(필요시) 및 도축장 일제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실행
- (출하 차량 관리) 돼지운반차량은 농장 진입 전후와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진입 전후로 차량 내외부, 하부 등 철저히 세척·소독 실시
 - * 권역별 지정된 차량을 이용하여 돼지 출하
 - 차량 운전자는 이동제한 농장 출하 이후에 당일 다른 농장 방문 금지
 - 차량 운전자는 돼지 상하차시 차에서 내리지 말고, 돼지 직접 접촉 금지
- (기타) 방역대 농장 돼지 도축 부산물 처리 등은 ASF SOP를 준용